

「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지원」 기업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공공기관·연구기관·대학 등에서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이용 활성화로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“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이용료 지원”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7일

전북특별자치도지사
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■ 1 지원개요

□ 지원목적

-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「장비정보제공시스템」 내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를 도내 기업이 활용 시 장비이용료를 보조하여 연구개발 활동 촉진 및 장비 활성화 제고

□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

- ① “중소기업”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- ② 공고일 기준 전북도 내 본사, 공장*, 기업부설연구소, 지사를 둔 기업 또는 창업·기술보육센터** 입주기업

*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공장

** 중소기업진흥공단, 대학, 국공립·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·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

- 지원내용 : 「전북특별자치도 장비정보제공시스템」에 등록된 장비에 대한 장비이용 수수료 지원



- 지원규모 : 45건 * 지원규모는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지원한도 : 기업당 연간 최대 **300만원**까지 * 부가가치세 제외
 - TP지원금 : 총 장비이용료의 **80% 이내** 지원
 - 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20% 이상
- 신청횟수 : 기업당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복수개의 장비 이용 신청 가능(n회 가능)
- 선정방법 : 지원대상 적격성 및 온라인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미충족 사유가 없을 시 지원확정
 - 단, 공고문 ③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
 - 사업비 한도 내에서 접수순으로 이용료 지원
- 기타사항 : 신청에 대한 기업 승인번호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아래 기한 내 장비이용 및 결과보고 완료 기업에 한해서 지원
 - 정한기한 내 이용 및 결과보고 지연 발생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재신청 필요

승인번호 발급일자	지원대상	비고
공고일 ~ 2026. 9. 21	90일 이내 장비 이용 및 결과보고 완료 기업	
2026. 9. 21 이후	2026. 12. 21까지 이용 및 결과보고 완료 기업	

※ 단, 기한 내 전북테크노파크에 보고 및 사전 협의가 된 기업에 한해 기한 연장 가능

■ 2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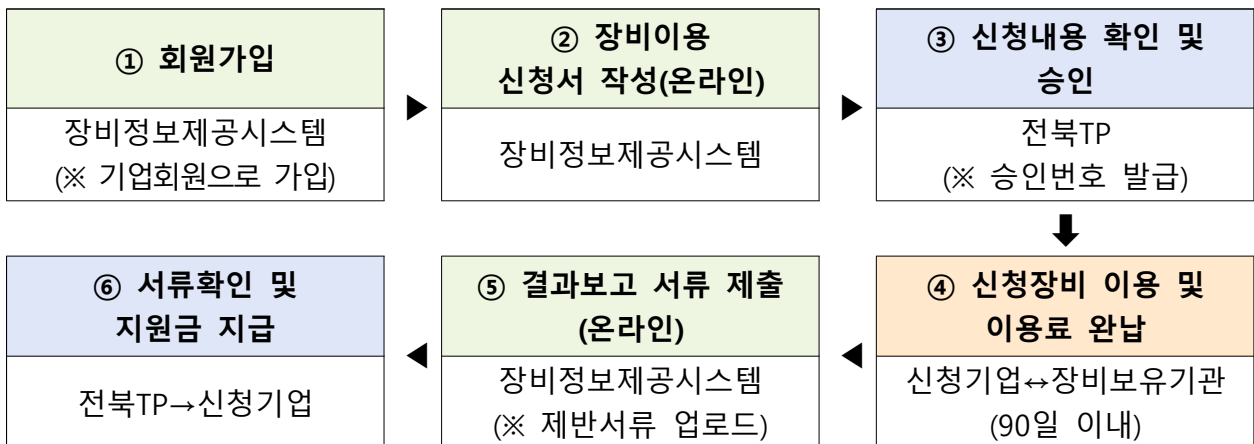
□ 신청기간 : 2026. 3. 17. ~ 2026. 12. 21 ※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및 접수

- ① 전북특별자치도 장비정보제공시스템(<https://jbjangbi.jbtp.or.kr/>) 접속
- ②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
- ③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 **장비 이용신청** 메뉴를 통해서 신청서 작성

※ 신청 전 장비이용 관련 세부사항(이용금액, 일정 등)은 장비 보유기관을 통해서 확인 必

□ 추진절차



< 참고사항 >

- ✓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이용금액은 장비보유기관에서 산정한 금액 작성(VAT 미포함)
- ✓ 결과보고 서류
 - ① 장비이용 결과보고서 : 지정서식 (JBTP홈페이지 or 장비정보제공시스템 공지사항 다운로드)
 - ② 장비이용 결과서류 : 성적(인증)서, 결과 데이터, 시험분석 보고서 등
 - ③ 장비이용료 완납 증빙서류 : 세금계산서or고지서(장비보유기관 발행), 이체확인증 등
 - ④ 신청기업 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지원금 입금용 계좌사본

■ 3 신청 제외 및 승인 취소사항

□ 신청 제외사항

- 신청자격이 지원 대상에 맞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본사업의 목적, 지원범위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기업이 장비이용 대상 아이템으로 타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된 경우
 - 아이템 중복, 유사·복수 지원의 경우 제외됨
 - 연구개발사업 내 시험 분석료를 편성하여 장비이용 후 지출하는 경우
- 부도 또는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
-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
- 다른 기업으로부터 시제작, 시험, 인증 등을 의뢰받아 비용 청구 및 지급을 받는 기업이 본 사업에 신청한 경우
 - 반드시 신청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시생산 목적인 경우만 신청 대상임
- 공고일 이전 이용한 건은 신청이 불가하며, 공고일 이후 이용한 장비에 한해서 신청 가능함

□ 승인 취소사항

- 최초 승인 이후, 정한기한에서 장비 이용 지연 발생 시 선정기업과 장비보유기관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지연발생 내용을 안내하여 “승인취소” 후 재신청 진행
- 승인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, 승인 및 지원 취소 및 보조금(지원금) 즉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

■ 4 유의사항

- 본 지원은 공공재정(도비)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‘공공재정환수법(“20.1.1.시행)’에 따라 지원금의 허위/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*이 부과됨

*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(허위청구 5배, 과다청구 3배, 목적 외 사용 2배)

■ 5 문의처

- 문의처 : 전북테크노파크 R&D기획관리팀 나지혜 선임연구원
- (TEL) 063-260-9324 / (E-mail) njh1116@jbtp.or.kr